

##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(공시송달)

「보험업법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원인사실, 과태료 금액,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30일  
금융위원회

### 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명/기관명	주민등록번호/등록번호	주소
조성옥	771208-*****	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32번길
최명선	840531-*****	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

### 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

### 3. 서류의 내용 :

#### 가.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

처분 대상자	처분 원인	근거법규	처분내용
보험설계사 조성옥	'13.4.12.~'13.5.21.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(19명)를 대상으로 '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(1304.2)' 등 19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(TM)하면서,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,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	보험업법 제97조 제1항, 제209조 제3항	과태료 650만원

처분 대상자	처분 원인	근거법규	처분내용
보험설계사 최명선	<p>'13.4.22.~'13.5.24.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(17명)를 대상으로 '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(1304.11)' 등 17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(TM)하면서,</p> <p>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,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</p>	보험업법 제97조 제1항, 제209조 제3항	과태료 560만원

#### 나. 유의사항

- 위반사실,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,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,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.
-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,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.

4.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2100-296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